



노인을 위한 정보

이것은 노인을 위한 일련의 안내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안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권한 부여하기

- 노인 학대와 방임 - 그것은 범죄인가?
- 경찰에 범죄 신고하기 및 신고 시 취해지는 조치
- 노인 학대와 방임 및 형사사법제도
-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 성인후견법 제3부에 의한 학대와 방임 신고하기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할 청구서가 있고 작성해야 할 양식이 있을 때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면 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에 관한 나의 일 관리를 다른 사람이 돕도록 허락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 대금 납부와 관련해 은행, 신용조합, 신탁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친구나 가족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정식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면 이 안내지에 몇 가지 일반적인 옵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지 끝에 도움을 받으실 만한 곳들의 목록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하시고 한 사람 이상에게서 조언을 받으십시오.

공동계좌(Joint bank account) - 대부분 노인은 연금수표를 은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청구서 대금을 매달 갚습니다. 돈 관리를 돕는 사람이 은행계좌를 공동명의로 하시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신뢰하는 사람을 선정하십시오. 공동명의인인 나와 그 사람 모두 청구서 대금을 다루고 출금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동소유권 항에서 설명한 대로 기타 복잡한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자산의 공동소유권(Joint ownership of assets) - 신변정리를 하는 노인 중에는 사망 시 유산의 유언검인과 유언검인료 납부를 피하려고 자신의 자산에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설정하면 나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망 시 주택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공동소유 자산은 대개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분할되는 유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나 수혜자가 있는 분에게 이는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동소유권에는 철저히 따져보아야 하는 그 밖의 잠재적인 문제와 복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거래은행의 직원과 공동계좌의 장단점을 알아보시고 공동소유 자산의 법적 의미를 변호사나 공증사와 상의하십시오.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예: 신탁회사)에 위임장을 부여하여 나의 재산이나 일을 관리할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은

- 특정적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이나 연금수표 현금화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 일반적이어도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나 사업체에 나의 모든 일과 재정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법률대리인에게 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법률대리인은 나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이고 나를 대신하여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나와 상의하거나 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리권동의서(Representation agreement) – 위임장과 달리 대리권동의서는 재정관리는 물론 개인 및 진료 관련 의사결정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대리권동의서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 표준 권한 – 대리인은 은행 입출금, 청구서 대금 납부 등 일상적인 재정을 다룰 뿐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부 진료 및 개인관리에 관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 추가 권한 – 대리인은 부동산을 대신 매매하거나, 사업체를 대신 운영하거나, 생명유지 및 치료 거부 같은 매우 중대한 보건상의 일부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대리인은 대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상의해야 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행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모니터를 별도로 지명하셔도 됩니다.

대리권동의서나 위임장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나 내 일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게 정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이런 문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아래 단체는 물론 다른 곳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Where to Get Legal Help)*이라는 안내지도 참조하십시오.)

- B.C.노인옹호지원센터(B.C. CEAS) – 법률정보를 구하고 소개를 받으려면 (604) 437-1940 또는 무료전화 1-866437-1940으로 연락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도 법률정보를 확인하십시오. www.bcceas.ca
- 전화 법률정보(Dial-A-Law) – 법에 관한 주제별 녹음 정보를 전화로 들을 수 있습니다. (604) 687-4680 또는 무료전화 1-800-565-5297
- 변호사 소개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 – 변호사와 30분 상담을 \$25에 주선하여 드립니다. (604) 687-3221 또는 무료전화 1-800-663-1919
- 시민법률학교(People's Law School) – 위임장과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간행물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publiclegaled.bc.ca
- BC공공후견인수탁인실(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 BC) –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와 도움 및 대리인과 법률대리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합니다. (604) 660-4444. www.trustee.bc.ca에서 *독자적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정 관리와 법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How You Can Help People Manage Finances and Legal Matters When They Cannot Manage On Their Own)*이라는 간행물을 찾아보십시오.
- 대리권동의서 자원센터(Representation Agreement Resource Centre) – (604) 408-7414. 웹사이트 www.rarc.ca에서 대리권동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십시오.